|  |  |  |
| --- | --- | --- |
| **《환경 행정처벌 청문절차 규정》****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環辦 [2010] 174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환경보호국, 副성급 도시 환경보호국, 각 환경보호 감독관리센터:《행정처벌법》을 관철 집행하고 《환경 행정처벌 방법》(部令 제8호)의 실시에 결부시켜 환경 행정처벌 청문절차를 한층 더 규율하기 위하여 당 부는 《환경 행정처벌 청문절차 규정》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붙임: 환경 행정처벌 청문절차 규정2010년 12월 27일붙임:**환경 행정처벌 청문절차 규정****제1장 총 칙****제1조** 환경 행정처벌 청문절차를 규율하고 환경보호주무부서의 의법 행정처벌 실시를 감독 및 보장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환경 행정처벌 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 절차규정을 제정한다.**제2조** 환경보호주무부서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청문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이 절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환경보호주무부서가 청문을 조직 시에는 공개, 공정 및 편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당사자의 진술, 변호 및 대질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제4조**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 되는 것은 제외하고 청문은 마땅히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청문에 방청을 신청할 수 있다.**제2장 청문의 적용범위****제5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아래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마땅히 청문을 조직하여야 한다.(1) 법인, 기타 조직에 대해 인민폐 50,000위안 이상, 또는 공민에 대해 인민폐 5,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2) 법인, 기타 조직에 대해 인민폐(또는 이에 대등한 물품가치) 50,000위안 이상, 또는 공민에 대해 인민폐(또는 이에 대등한 물품가치) 5,000위안 이상의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불법재물을 몰수하고자 하는 경우(3) 허가증 또는 기타 허가 성격의 증서를 임사 압류,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4) 생산중지, 휴업, 폐쇄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제6조** 환경보호주무부서가 안건이 중대하고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청문을 조직할 수 있다.**제3장 청문회 주최인 및 청문회 참가자****제7조** 청문회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환경보호주무부서가 조직한다.**제8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1명의 청문회 주최인과 1명의 서기를 지정하여 청문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필요시에는 청문요원을 지정하여 청문회 주최인을 협조하게 할 수 있다.본 안건의 조사요원은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또는 서기로 될 수 없다.전문지식이 필요한 청문안건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청문요원을 담임하게 할 수 있다.**제9조** 청문회 주최인은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1) 청문회를 소집하는 일시, 장소를 결정(2)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주최(3) 청문사항에 대하여 질문(4) 증거를 접수 및 심사하며, 필요시에는 청문회 참가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5) 청문질서를 유지(6) 청문회의 중지, 종료 또는 연기를 결정(7) 청문기록을 사열(8) 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의 직책.청문요원은 주최인의 상기 직책의 수행을 협조한다.서기는 청문준비와 청문기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를 감당한다.**제10조** 청문회 주최인은 아래의 의무를 진다.(1) 청문통지서를 안건의 청문참가자에게 송달하도록 결정(2) 청문회를 공정하게 주최하여 당사자의 진술권, 변호권 및 대질권의 행사를 보장(3) 기피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4) 청문안건과 관계되는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5) 본 부서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청문회 상황을 보고.서기는 청문기록을 여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 조 제(3), (4)호에서 규정한 의무를 진다.**제1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는 스스로 기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그에게 기피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1) 본 안건 조사요원이나 조사요원의 근친족인 경우(2) 본 안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근친족인 경우(3)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당사자 대리인의 근친족인 경우(4) 본 안건의 증인, 감정인, 검측요원인 경우(5) 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6) 청문사항과 기타 관계가 존재하므로 청문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전 항의 규정은 감정인, 검측요원에게도 적용된다.**제12조** 당사자는 청문회 개시 전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청문회가 개시된 후 기피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기피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피신청 대상자는 청문관련 업무를 중지하지 아니한다.**제13조** 청문요원, 서기, 증인, 감정인, 검측요원의 기피는 청문회 주최인이 결정하며, 청문회 주최인의 기피는 청문조직기구 책임자가 결정한다. 청문회 주최인이 청문조직기구의 책임자인 경우 그 기피는 환경보호주무부서의 책임자가 결정한다.**제14조** 당사자는 아래의 권리를 향유한다.(1) 청문 신청 또는 포기(2) 법에 따라 비공개 청문을 신청(3) 법에 따라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의 기피를 신청(4) 직접 청문에 참가하거나 또는 1명 내지 2명의 대리인에게 청문 참석을 위임(5) 청문사항과 관련하여 진술, 변호, 입증, 대질(6) 마지막 진술(7) 청문기록을 사열 및 대조(8) 법에 따라 안건서류를 사열.**제15조** 당사자는 아래의 의무를 진다.(1) 법에 따라 입증, 대질(2) 여실하게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3) 청문회 기율을 준수.안건 조사요원, 제3자, 관련 증인도 상기 의무를 진다.**제16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청문회에 참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환경주무부서는 그가 제3자로서 청문에 참가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 내지 5명의 대표를 추천하여 청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청문회 개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4장 청문의 고지, 신청 및 통지****제17조**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행정처벌 안건에 대해 환경보호주무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행정처벌 청문고지서》를 제작 및 송달하여 당사자에게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행정처벌 청문고지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2) 이미 조사 확인한 환경 위법사실과 증거, 처벌이유 및 의거(3) 내리고자하는 행정처벌의 종류 및 정도(4) 당사자의 청문 신청 권리(5) 청문 신청을 제출하는 기한, 신청방식 및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적 결과(6) 환경보호주무부서의 명칭과 작성일자를 밝히고 환경보호주무부서의 직인 날인.**제18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청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환경보호주무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청문을 조직하지 아니한다.우송방식으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송 소인일자가 신청일자로 된다.불가항력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규정한 기한 내에 청문 신청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장애가 제거된 3일 이내에 청문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제19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당사자의 청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조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이유를 고지하며, 청문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처벌 청문통지서》를 제작 및 송달한다.**제20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환경보호주무부서는 청문을 조직하지 아니한다.(1) 신청인이 본 안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2) 규정한 기한을 지나서 청문을 신청한 경우(3) 이 절차규정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청문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4) 청문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기타 상황.**제21조** 동일 행정처벌 안건의 2개 이상 당사자가 각기 청문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청문회를 병합 소집할 수 있다.안건 당사자가 2개 이상이고 그중 일부 당사자가 청문 신청을 제출한 경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기타 당사자에게 청문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일부 당사자가 청문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 당사자의 안건사실, 증거, 법률 적용에 한해서만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제22조** 청문회는 청문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행정처벌 청문통지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청문회를 소집하는 7일 전에 당사자와 제3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2) 청문 안건의 개요(3) 청문회 소집 일시와 장소(4) 청문의 공개소집 여부 또는 비공개 청문의 이유(5)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의 성명, 소속단위, 직무 등 정보(6) 위탁대리권, 청문회 주최인과 청문요원에 대한 기피신청권한 등 권리(7) 사전 위임 수속, 소지 증거서류, 증인의 출두 통지 등의 유의사항(8) 환경보호주무부서 명칭과 작성일자를 밝히고 환경보호주무부서의 직인 날인.**제23조** 당사자가 청문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소집하는 3일 전에 청문을 조직하는 환경보호주무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이유가 정당한 경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마땅히 그에 동의하여야 한다.**제24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장소 등 요건에 근거하여 청문회 방청인수를 확정할 수 있다.**제25조** 위탁대리인이 청문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위탁인 및 그 대리인의 기본정보(2) 위탁사항 및 권한(3) 대리권의 시말일자(4) 위탁일자(5) 위탁인의 서명 또는 날인.**제26조** 안건 조사요원, 당사자, 제3자는 감정인, 검측요원 및 증인에게 통지하여 청문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청문회를 소집하는 1일 전에 전술한 인원의 기본상황과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청문을 조직하는 환경보호주무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제5장 청문회의 소집****제27조** 청문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1) 서기가 청문회 참가자의 신분과 입회 상황을 확인하고 청문회 장내의 기율과 주의사항을 선포하며,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의 성명, 근무단위, 직무를 소개한다.(2) 청문회 주최인이 청문회 개시를 선포하고 청문 안건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청문회 참가자의 신분에 대해 질문 확인하고 청문회 주최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한다. 당사자, 제3자가 청문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의 기피를 요구하는 가를 확인한다. (3) 안건 조사요원이 당사자의 불법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초보적인 처벌의견과 의거를 제기한다.(4) 당사자가 진출, 변호하고 사실의 이유와 의거, 증거를 제시한다.(5) 제3자가 진술하고 사실의 이유와 의거, 증거를 제시한다.(6) 안건 조사요원, 당사자, 제3자가 대질, 변론한다.(7) 안건 조사요원, 당사자, 제3자가 마지막 진술을 한다.(8) 청문회 주최인이 청문회가 종료됨을 선포한다.**제28조** 청문회 참가자와 방청자는 아래의 회의장 기율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문회 주최인의 허락이 없이 청문회 참가자는 발언, 질문을 하지 못한다.(2) 청문회 주최인의 허락이 없이 참가자는 퇴장을 하지 못한다.(3) 청문회 주최인의 허락이 없이 청문회 참가자와 청문요원은 녹음, 녹화 또는 사진을 찍지 못한다.(4) 방청인원은 발언, 질문을 할 수 없다.(5) 청문회 참가자와 방청자는 떠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복닥거리거나,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또는 기타의 청문에 지장을 주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청문회 참가자와 방청자가 상기 기율을 지키지 않아 청문회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청문회 주최인은 경고를 주거나 나아가서는 그에게 퇴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29조** 청문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청문 신청인이 청문회기율을 위반하여 청문회 주최인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청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0조** 청문 과정에서 청문회 주최인은 안건 조사요원, 당사자, 제3자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여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제31조** 안건과 관련한 증거는 청문 중에서 제시하고 대질을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증거는 청문회 주최인과 청문요원이 검증하며,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다.**제32조** 대질은 증거의 합법성, 진실성, 관련성을 둘러싸고 진행하여야 하며, 증거의 증명효력의 유무 및 증거효력의 정도에 대해 질의, 설명 및 변론하거나 반박한다.**제33조** 서증, 물증 또는 영상자료에 대해 대질할 시에는 증거의 원본이나 원물을 제시하여야 한다.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청문회 주최인의 동의를 거쳐 복제본 또는 복제품을 제시할 수 있다.(1) 원본 또는 원물을 제시하기에 확실히 어려운 경우(2) 원본 또는 원물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4조** 영상자료는 청문회에서 방송하거나 시현하고 대질을 거친 후 인정하여야 한다.**제35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청문회의 제반 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청문기록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청문 안건의 개오(2)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의 성명, 소속단위, 직무(3) 청문회 참가자의 기본상황(4) 청문회 개시 일시, 장소(5) 청문 공개상황(6) 안건 조사요원이 진술한 당사자의 불법사실과 증거, 제출한 초보적인 처리의견과 의거(7) 당사자와 기타 청문회 참가자의 주요 관점, 이유 및 의거(8) 상호 대질, 변론 상황(9) 연기, 중지 또는 종료에 대한 설명(10) 청문회 주최인의 청문활동 중의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11) 청문회 주최인이 청문기록에 기재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청문이 완료한 후 청문기록은 의견을 진술한 안건 조사요원, 당사자, 제3자에게 교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 당장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서명이나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청문기록에 기재한다.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는 심사를 거쳐 오류가 없는 경우 청문 기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제36조** 청문이 끝난 후 청문회 주최인은 청문상황을 서면으로 본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한다.청문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1) 청문회 소집 일시, 장소(2) 청문 안건 개요, 청문 내용(3)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 청문회 참가자의 기본정보(4) 청문회 참가자가 제출한 주요 사실, 이유 및 의견(5)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용 건의 및 이유(6) 종합분석 및 처벌건의.**제37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1)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해 청문회를 제때에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2) 당사자가 청문회에서 청문회 주최인의 기피를 신청함과 아울러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3) 당사자가 연기 신청을 제출함과 아울러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4) 청문회를 연기해야 하는 기타 상황.청문회를 소집하기 전에 상기 상황이 나타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아울러 청문회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간에 상기 상황이 나타난 경우 청문회 주최인은 청문회 연기를 결정하고 아울러 이를 청문기록에 기재한다.**제3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중지하고 서면으로 청문회 참가자에게 통지한다.(1) 청문회 주최인이 청문 과정에서 제출된 새로운 사실, 이유, 의거에 대해 한층 더 조사 확인이나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청문회를 중지해야 하는 기타 상황.**제39조** 청문회 연기, 중지 상황이 소멸된 후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청문 회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문회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0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종료한다.(1) 당사자가 청문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2) 청문 신청인이 청문신청을 철회한 경우(3) 청문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청문 신청인이 청문 과정에서 퇴출을 성명한 경우(5) 청문 신청인이 청문회 주최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중도에 퇴장한 경우(6) 청문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고 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된 후 해당 권리, 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조직이 청문권리를 포기한 경우(7) 청문 신청인이 청문기율을 위반하고 청문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여 청문 주최인에 의해 퇴장을 당한 경우(8) 객관적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청문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9) 청문을 종료해야 하는 기타 상황.청문회를 소집하기 전에 상기 상황이 나타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청문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청문회 참가자에게 통지하며, 청문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상기 상황이 나타난 경우 청문회 주최인은 청문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문 기록에 기재한다.**제41조** 청문회를 소집하는 기간은 행정처벌의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6장 부 칙****제42조** 이 절차 규정에서 당사자라 함은 청문절차에 적용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됨을 사전에 통보받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이 절차 규정에서 안건 조사요원이라 함은 환경보호주관부서 내부에서 행정처벌 안건조사, 증거취득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 자를 가리킨다.**제43조** 법률, 법규의 수권을 얻은 환경검사기구는 이 절차규정 중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제44조**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건설 중지를 명령하거나 생산 또는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청문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45조**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청문 소집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행정기관의 행정경비에서 지출하며 본급 재정에서 보장한다.당사자는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소집하는 청문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46조**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속단위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제47조** 지방성 법규, 지방 정부의 규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제48조**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关于印发《环境行政处罚听证****程序规定》的通知**环办[2010]174号各省、自治区、直辖市环境保护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环境保护局，副省级城市环境保护局，各环境保护督查中心：为贯彻执行《行政处罚法》，配合《环境行政处罚办法》（部令第8号）的实施，进一步规范环境行政处罚听证程序，我部制定了《环境行政处罚听证程序规定》。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附件：环境行政处罚听证程序规定二○一○年十二月二十七日　　附件：**环境行政处罚听证程序规定****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环境行政处罚听证程序，监督和保障环境保护主管部门依法实施行政处罚，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环境行政处罚办法》等法律、行政法规和规章的有关规定，制定本程序规定。　　**第二条** 环境保护主管部门作出行政处罚决定前，当事人申请举行听证的，适用本程序规定。　　**第三条** 环境保护主管部门组织听证，应当遵循公开、公正和便民的原则，充分听取意见，保证当事人陈述、申辩和质证的权利。　　**第四条** 除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外，听证应当公开举行。公开举行的听证，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申请参加旁听。**第二章 听证的适用范围**　**第五条** 环境保护主管部门在作出以下行政处罚决定之前，应当告知当事人有申请听证的权利；当事人申请听证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组织听证：　　（一）拟对法人、其他组织处以人民币50000元以上或者对公民处以人民币5000元以上罚款的；　　（二）拟对法人、其他组织处以人民币（或者等值物品价值）50000元以上或者对公民处以人民币（或者等值物品价值）5000元以上的没收违法所得或者没收非法财物的；　　（三）拟处以暂扣、吊销许可证或者其他具有许可性质的证件的；　　（四）拟责令停产、停业、关闭的。　　**第六条** 环境保护主管部门认为案件重大疑难的，经商当事人同意，可以组织听证。**第三章 听证主持人和听证参加人**　　**第七条** 听证由拟作出行政处罚决定的环境保护主管部门组织。　　**第八条**　环境保护主管部门指定1名听证主持人和1名记录员具体承担听证工作，必要时可以指定听证员协助听证主持人。　　听证主持人、听证员和记录员应当是非本案调查人员。　　涉及专业知识的听证案件，可以邀请有关专家担任听证员。　　**第九条**　听证主持人履行下列职责：　　（一）决定举行听证会的时间、地点；　　（二）依照规定程序主持听证会；　　（三）就听证事项进行询问；　　（四）接收并审核证据，必要时可要求听证参加人提供或者补充证据；　　（五）维持听证秩序；　　（六）决定中止、终止或者延期听证；　　（七）审阅听证笔录；　　（八）法律、法规、规章规定的其他职责。　　听证员协助听证主持人履行上述职责。　　记录员承担听证准备和听证记录的具体工作。　　**第十条** 听证主持人负有下列义务：　　（一）决定将听证通知送达案件听证参加人；　　（二）公正地主持听证，保障当事人行使陈述权、申辩权和质证权；　　（三）具有回避情形的，自行回避；　　（四）保守听证案件涉及的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　　（五）向本部门负责人书面报告听证会情况。　　记录员应当如实制作听证笔录，并承担本条第（三）、（四）项所规定的义务。　　**第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听证主持人、听证员、记录员应当自行回避，当事人也有权申请其回避：　　（一）是本案调查人员或者调查人员的近亲属；　　（二）是本案当事人或者当事人的近亲属；　　（三）是当事人的代理人或者当事人代理人的近亲属；　　（四）是本案的证人、鉴定人、监测人员；　　（五）与本案有直接利害关系；　　（六）与听证事项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听证的。　　前款规定，也适用于鉴定、监测人员。　　**第十二条** 当事人应当在听证会开始前书面提出回避申请，并说明理由。　　在听证会开始后才知道回避事由的，可以在听证会结束前提出。　　在回避决定作出前，被申请回避的人员不停止参与听证工作。　　**第十三条** 听证员、记录员、证人、鉴定人、监测人员的回避，由听证主持人决定；听证主持人的回避，由听证组织机构负责人决定；听证主持人为听证组织机构负责人的，其回避由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人决定。　　**第十四条**　当事人享有下列权利：　　（一）申请或者放弃听证；　　（二）依法申请不公开听证；　　（三）依法申请听证主持人、听证员、记录员回避；　　（四）可以亲自参加听证，也可以委托1至2人代理参加听证；　　（五）就听证事项进行陈述、申辩和举证、质证；　　（六）进行最后陈述；　　（七）审阅并核对听证笔录；　　（八）依法查阅案卷材料。　　**第十五条** 当事人负有下列义务：　　（一）依法举证、质证；　　（二）如实陈述和回答询问；　　（三）遵守听证纪律。　　案件调查人员、第三人、有关证人亦负有上述义务。　**第十六条**　与案件有直接利害关系的公民、法人或其他组织要求参加听证会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通知其作为第三人参加听证。　　第三人超过5人的，可以推选1至5名代表参加听证，并于听证会前提交授权委托书。**第四章 听证的告知、申请和通知**　　**第十七条** 对适用听证程序的行政处罚案件，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作出行政处罚决定前，制作并送达《行政处罚听证告知书》，告知当事人有要求听证的权利。　　《行政处罚听证告知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　　（二）已查明的环境违法事实和证据、处罚理由和依据；　　（三）拟作出的行政处罚的种类和幅度；　　（四）当事人申请听证的权利；　　（五）提出听证申请的期限、申请方式及未如期提出申请的法律后果；　　（六）环境保护主管部门名称和作出日期，并且加盖环境保护主管部门的印章。　　**第十八条** 当事人要求听证的，应当在收到《行政处罚听证告知书》之日起3日内，向拟作出行政处罚决定的环境保护主管部门提出书面申请。当事人未如期提出书面申请的，环境保护主管部门不再组织听证。　　以邮寄方式提出申请的，以寄出的邮戳日期为申请日期。　　因不可抗力或者其他特殊情况不能在规定期限内提出听证申请的，当事人可以在障碍消除的3日内提出听证申请。　　**第十九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收到当事人听证申请之日起7日内进行审查。对不符合听证条件的，决定不组织听证，并告知理由。对符合听证条件的，决定组织听证，制作并送达《行政处罚听证通知书》。　　**第二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拟作出行政处罚决定的环境保护主管部门决定不组织听证：　　（一）申请人不是本案当事人的；　　（二）未在规定期限内提出听证申请的；　　（三）不属于本程序规定第五条、第六条规定的听证适用范围的；　　（四）其他不符合听证条件的。　　**第二十一条**　同一行政处罚案件的两个以上当事人分别提出听证申请的，可以合并举行听证会。　　案件有两个以上当事人，其中部分当事人提出听证申请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通知其他当事人参加听证。　　只有部分当事人参加听证的，可以只对涉及该部分当事人的案件事实、证据、法律适用进行听证。　　**第二十二条** 听证会应当在决定听证之日起30日内举行。　　《行政处罚听证通知书》应当载明下列事项，并在举行听证会的7日前送达当事人和第三人：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　　（二）听证案由；　　（三）举行听证会的时间、地点；　　（四）公开举行听证与否及不公开听证的理由；　　（五）听证主持人、听证员、记录员的姓名、单位、职务等信息；　　（六）委托代理权、对听证主持人和听证员的回避申请权等权利；　　（七）提前办理授权委托手续、携带证据材料、通知证人出席等注意事项；　　（八）环境保护主管部门名称和作出日期，并盖有环境保护主管部门印章。　　**第二十三条** 当事人申请变更听证时间的，应当在听证会举行的 3日前向组织听证的环境保护主管部门提出书面申请，并说明理由。　　理由正当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同意。　　**第二十四条** 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根据场地等条件，确定旁听听证会的人数。　　**第二十五条**　委托代理人参加听证的，应当在听证会前提交授权委托书。授权委托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委托人及其代理人的基本信息；　　（二）委托事项及权限；　　（三）代理权的起止日期；　　（四）委托日期；　　（五）委托人签名或者盖章。　　**第二十六条**　案件调查人员、当事人、第三人可以通知鉴定人、监测人员和证人出席听证会，并在听证会举行的1日前将前述人员的基本情况和拟证明的事项书面告知组织听证的环境保护主管部门。**第五章 听证会的举行**　　**第二十七条** 听证会按下列程序进行：　　（一）记录员查明听证参加人的身份和到场情况，宣布听证会场纪律和注意事项，介绍听证主持人、听证员和记录员的姓名、工作单位、职务；　　（二）听证主持人宣布听证会开始，介绍听证案由，询问并核实听证参加人的身份，告知听证参加人的权利和义务；询问当事人、第三人是否申请听证主持人、听证员和记录员回避；　　（三）案件调查人员陈述当事人违法事实，出示证据，提出初步处罚意见和依据；　　（四）当事人进行陈述、申辩，提出事实理由依据和证据；　　（五）第三人进行陈述，提出事实理由依据和证据；　　（六）案件调查人员、当事人、第三人进行质证、辩论；　　（七）案件调查人员、当事人、第三人作最后陈述；　　（八）听证主持人宣布听证会结束。　　**第二十八条** 听证参加人和旁听人员应当遵守如下会场纪律：　　（一）未经听证主持人允许，听证参加人不得发言、提问；　　（二）未经听证主持人允许，听证参加人不得退场；　　（三）未经听证主持人允许，听证参加人和旁听人员不得录音、录像或者拍照；　　（四）旁听人员不得发言、提问；　　（五）听证参加人和旁听人员不得喧哗、鼓掌、哄闹、随意走动、接打电话或者进行其他妨碍听证的活动。　　听证参加人和旁听人员违反上述纪律，致使听证会无法顺利进行的，听证主持人有权予以警告直至责令其退出会场。　　**第二十九条** 听证申请人无正当理由不出席听证会的，视为放弃听证权利。　　听证申请人违反听证纪律被听证主持人责令退出会场的，视为放弃听证权利。　　**第三十条** 在听证过程中，听证主持人可以向案件调查人员、当事人、第三人和证人发问，有关人员应当如实回答。　　**第三十一条** 与案件相关的证据应当在听证中出示，并经质证后确认。　　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证据，由听证主持人和听证员验证，不公开出示。　　**第三十二条**　质证围绕证据的合法性、真实性、关联性进行，针对证据证明效力有无以及证明效力大小进行质疑、说明与辩驳。　　**第三十三条**　对书证、物证和视听资料进行质证时，应当出示证据的原件或者原物。　　有下列情形之一，经听证主持人同意可以出示复制件或者复制品：　　（一）出示原件或者原物确有困难的；　　（二）原件或者原物已经不存在的。　　**第三十四条** 视听资料应当在听证会上播放或者显示，并进行质证后认定。　　**第三十五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对听证会全过程制作笔录。听证笔录应当载明下列事项：　　（一）听证案由；　　（二）听证主持人、听证员和记录员的姓名、工作单位、职务；　　（三）听证参加人的基本情况；　　（四）听证的时间、地点；　　（五）听证公开情况；　　（六）案件调查人员陈述的当事人违法事实、证据，提出的初步处理意见和依据；　　（七）当事人和其他听证参加人的主要观点、理由和依据；　　（八）相互质证、辩论情况；　　（九）延期、中止或者终止的说明；　　（十）听证主持人对听证活动中有关事项的处理情况；　　（十一）听证主持人认为应当记入听证笔录的其他事项。　　听证结束后，听证笔录交陈述意见的案件调查人员、当事人、第三人审核无误后当场签字或者盖章。拒绝签字或者盖章的，将情况记入听证笔录。　　听证主持人、听证员、记录员审核无误后在听证笔录上签字或者盖章。　　**第三十六条** 听证终结后，听证主持人将听证会情况书面报告本部门负责人。　　听证报告包括以下内容：　　（一）听证会举行的时间、地点；　　（二）听证案由、听证内容；　　（三）听证主持人、听证员、书记员、听证参加人的基本信息；　　（四）听证参加人提出的主要事实、理由和意见；　　（五）对当事人意见的采纳建议及理由；　　（六）综合分析，提出处罚建议。　　**第三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延期举行听证会：　　（一）因不可抗力致使听证会无法按期举行的；　　（二）当事人在听证会上申请听证主持人回避，并有正当理由的；　　（三）当事人申请延期，并有正当理由的；　　（四）需要延期听证的其他情形。　　听证会举行前出现上述情形的，环境保护主管部门决定延期听证并通知听证参加人；听证会举行过程中出现上述情形的，听证主持人决定延期听证并记入听证笔录。　　**第三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中止听证并书面通知听证参加人：　　（一）听证主持人认为听证过程中提出的新的事实、理由、依据有待进一步调查核实或者鉴定的；　　（二）其他需要中止听证的情形。　　**第三十九条** 延期、中止听证的情形消失后，环境保护主管部门决定恢复听证的，应书面通知听证参加人。　**第四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终止听证：　　（一）当事人明确放弃听证权利的；　　（二）听证申请人撤回听证申请的；　　（三）听证申请人无正当理由不出席听证会的；　　（四）听证申请人在听证过程中声明退出的；　　（五）听证申请人未经听证主持人允许中途退场的；　　（六）听证申请人为法人或者其他组织的，该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后，承受其权利、义务的法人或者组织放弃听证权利的；　　（七）听证申请人违反听证纪律，妨碍听证会正常进行，被听证主持人责令退场的；　　（八）因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致使听证会没有必要举行的；　　（九）应当终止听证的其他情形。　　听证会举行前出现上述情形的，环境保护主管部门决定终止听证，并通知听证参加人；听证会举行过程中出现上述情形的，听证主持人决定终止听证并记入听证笔录。　　**第四十一条** 举行听证会的期间，不计入作出行政处罚的时限内。**第六章 附 则**　　**第四十二条** 本程序规定所称当事人是指被事先告知将受到适用听证程序的行政处罚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　　本程序规定所称案件调查人员是指环境保护主管部门内部具体承担行政处罚案件调查取证工作的人员。　　**第四十三条** 经法律、法规授权的环境监察机构，适用本程序规定关于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　　**第四十四条** 环境保护主管部门在作出责令停止建设、责令停止生产或使用的行政命令之前，认为需要组织听证的，可以参照本程序规定执行。　　**第四十五条** 环境保护主管部门组织听证所需经费，列入本行政机关的行政经费，由本级财政予以保障。　　当事人不承担环境保护主管部门组织听证的费用。　　**第四十六条**　听证主持人、听证员、记录员违反有关规定的，由所在单位依法给予行政处分。　　**第四十七条**　地方性法规、地方政府规章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四十八条** 本规定自2011年2月1日起施行。 |